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상훈·김위상

박충권 • 이헌승 • 김소희

김성원 • 구자근 • 윤상현

정동만 · 최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,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 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 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·유통될 수 있도록 「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11조의2의 제목 중 "지원"을 "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·유통될 수 있도록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11조의2(농어업경영체에	대한	제11조의2(농어업경영체에 대한
<u>지원</u>) (생 략)		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)
	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	<u></u> 이
<u> <신 설></u>	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		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
		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
		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
		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
		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
		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
		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
		국내에 유입・유통될 수 있도
		록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
		안정화 지원 기본법」에 따른
		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